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5. 9.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이성윤의원 등 12인	2025.08.14.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08.26.)		
				소위	제429회 국회(정기회)		
1	12184			고 심사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9.02.)		
					제429회 국회(정기회)		
				안조위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5.09.04.)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김용민의원 등 20인	2025.08.21.		제1차 전체회의(2025.08.26.)		
2	12281			소위	제429회 국회(정기회)		
				심사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9.02.)		
				안조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5.09.04.)		
		장경태의원 등 27인	2025.08.26.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12366			2 0)	제1차 전체회의(2025.08.26.)		
3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9.02.)		
				검사	제1차 합인점차제1조귀(2025.09.02.) 제429회 국회(정기회)		
				안조위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5.09.04.)		
		김용민의원 등 10인	2025.08.2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12434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09.01.)		
4				소위	제429회 국회(정기회)		
				심사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9.02.)		
				안조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5.09.0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09.02.)는 위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5.09.04.)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09.04.)는 제1차 안 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안건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 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내란 및 외환사건과 같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의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며 이를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더해,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규정하면서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소가진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이진행되면서 특검 수사의 목적과 충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군검사가기소한 사건을 이첩받으면 증거능력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대신에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문제점 때문에 특검은 이첩요구를 하기 어려움. 이에 군검사·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함.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의 취지에 따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이 인계를 받도록 하며,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고 관할 지방검찰 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이에 더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되어야 함. 특히 제2조제1항각 호의 사건과 같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심리는 국민적 감시와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 제외)에 한하여는 신청 여부와관계없이 중계를 실시하도록 하여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나머지 재판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중계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 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 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신설).

- 나. 파견검사의 상한을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단서)
- 다. 군검사·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공소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 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안 제8조제목 및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 마.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총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수 사본부장에게 인계를 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 사법 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전단 및 제7항, 제10조제8항 신설).
- 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 제

- 외)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7항 신설, 제5항 및 제6항).
- 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 있도록 하되,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및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 신설).

법률 제 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 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 4.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제6조제5항 단서 중 "60명"을 "70명"으로, "100명"을 "1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군사법원법」과"를 "「군사법원법」,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로, "군검사의"를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의"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수사관"을 "특별수사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2회에 한하여"로, "30일"을 "각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따라"를 "따른"으로,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 하에"로,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 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재판장은"을 "전항의 제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으로한다.

- ④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은 제외한다)은 중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법률 제20990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단서 중 "제10조제7항"을 "제10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내란 등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중인 사 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수사기간

등,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의 수 등에 대하여도 이 법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형벌 등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
			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u>죄</u>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
			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
			<u>는 범죄</u>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
			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
			<u>지, 제355</u> 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
			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
			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
한 등) ① ~ ④	(생 략)		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수는 6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파견공무원의 수는 100명이내로 한다.
- ⑥ · ⑦ (생 략)
- ⑧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u>군검사의</u> 권한에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 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⑤
<u>70명</u>
<u>140명</u>
<u>.</u>
⑥ · ⑦ (현행과 같음)
8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_ 과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의
<u>.</u>
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
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
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 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별검사보와 <u>특별수사관</u>) ① (생 략)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 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후단 신설>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 필요한 경우 공소를 수행하
는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서면(「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
<u>다.</u>
<u>④</u> 제2항 및 제3항
,
제8조(특별검사보와 <u>특별수사관</u>
<u>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

- ③ ~ ⑥ (생 략)
-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② (생 략)
 -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한다.
 - ④ ⑤ (생 략)
 -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 그 보

<u>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u>
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u>수 있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2회에 한하여
각 30일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
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 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 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 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 용한다.

<신 설>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 ③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⑦ -----배당 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 관은 특별검사의 지휘 하에--------- 완료하고, 범죄 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 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 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 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 용한다.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 은 제외한다)은 중계하여야 한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u>⑤</u> (생 략) <신 설>

<u>다.</u>	다만,	재판정	상은	국가	<u>안전</u>
<u>보</u>	장을 중	·대하기] 해	할 수	<u> 려가</u>
있(어 피고	인, 검	사가	모두	동의
하 :	는 경우	무에는	재판	의 일]부를
중:	계하지	아니할	· 수	있다.	
<u>(5)</u>	<u>전항</u>	비 제1	심을	제오]하고
재 :	<u> 판장은</u> -				
<u>6</u>	(현행	제5항고	과 같	음)	
$\overline{(7)}$	제4항	또는	제5	항에	따라

①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

<신 설>

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 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제25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 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 한 때
-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 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 3. 수사 · 재판절차에서 해당 사 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 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 죄로 처벌되는 경우

법률 제20990호 윤석열 전 대통 법률 제20990호 윤석열 전 대통

명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5조 저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 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 진다. 다만, 제10조제7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령	등	에	의	한 1	내 란	• •	리환	행	위
의	そ]상	규`	명을	위	한	특별	검	사
임대	경	등	케	관한	· 법	률	일부	나개	정
			•	법률	부	칙			
_									

제2조(유효기간)
<u>제10조제8항</u>